

재난상황 시 예비군 긴급대응부대 창설 및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stablish and Operating Plan of Reserve Components Emergency Response Forces

SeungBae Seon^{a,*}

^a Department of Military scienc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99 Daehak-ro, Yuseong-gu, Daejeon 34134, ROK

ABSTRACT

In the event of a disaster, we need people who specialize in rapid regional disaster recovery. However, in the present disaster response system, disaster relief is carried out at the level of public support, volunteer service, etc. There are various problems such as initial response due to lack of expertise, delays in disaster recovery, and inadequate response to disaste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unit with early ability to respond to local governments in the event of a disaster and expertise to enable rapid disaster recovery. Therefore, this study limited the preparation of the reserve forces emergency response units for the direction of local security, disaster relief and disaster relief through emergency disaster recovery under the disaster situation.

KEYWORDS

Disaster situation,
Disaster recovery,
Reserve Forces,
Emergency
response unit,
Establish,
Operating plan

재난상황하에서는 신속한 지역단위 재난복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재난대응체계에서는 대민지원, 자원봉사 등 수준에서 재난복구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초기대응 및 재난복구 지연, 재난 지속시 대응 미흡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재난상황시 지자체단위 초기 대응능력 구비와 신속히 재난복구를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부대의 창설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난상황하 긴급 재난복구를 통한 지역안정과 재해 주민구호, 재난이전으로의 신속한 전환을 위한 예비군 긴급대응부대를 창설과 운용방안 수준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재난상황,
재난복구,
예비군,
긴급대응부대,
창설,
운용방안

© 2018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All rights reserved

* Corresponding author. Tel. 82-10-5084-6581. Email. rct707@naver.com

ARTICLE HISTORY

Received Nov. 11, 2017
Revised Nov. 13, 2017
Accepted Mar. 6, 2018

1. 서론

최근 기후의 변화로 인한 예측이 곤란한 자연재해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례로, 2017년 7월 케릴라성 집중호우로 청주 일부 지역이 침수되어 피해지역이 광범위화 되고 피해규모가 대형화 되었으며, 2007년 9월 제주도의 경우는 열대지방의 스콜(Squall)과 흡사한 집중호우로 해안 바닷물이 범람하여 제주시 등이 침수하였고, 2014년 강원도 속초·양양·고성 등 영동지역의 폭설, 2007년과 2005년에는 전라북도 정읍·고창·익산지역의 폭설 및 AI발생, 2016년과 2017년 경주와 포항 지진 등으로 주요 도로가 마비되고, 고립지역 주민과 이재민 발생, 전기·수도·통신 등 도시기반시설이 마비된 사례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만 보더라도 다수의 재난상황이 발생하였으나, 재난현장의 모습은 100% 현역으로만 지원하는 모습이었을 뿐 예비군이 재난을 복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물론, 2007년 9월 21일 제주도의 폭우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었을 경우에는 예비군 628명을 동원하여 재난복구를 한 사례가 있었으나, 예비군 긴급대응부대로 보기는 어렵고, 재난동원을 실시한 사례가 될 수 있다. 최근 자연재난과 사회적재난 등의 행태를 볼 때 군의 역할과 지원은 지속적으로 증대할 것으로 판단되나, 육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지역별 분권화된 전문성 있는 전문재난구조부대 6개부대가 있을 뿐이고, 이중에서도 1개 대대급(230여명) 등 소규모 부대로 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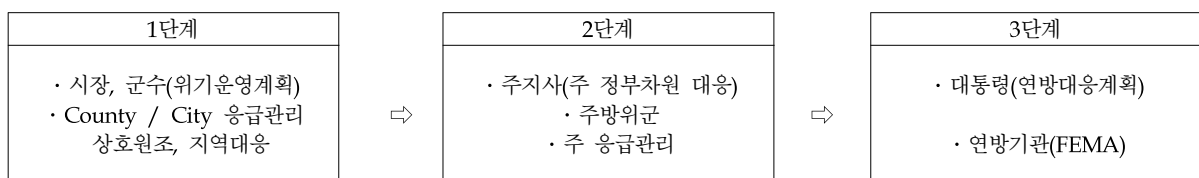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난상황에서 전문재난구조부대로서의 현용전력과 더불어 미국의 사례처럼 민간정부와 비정부기구가 감당하지 못할 대형재난이 발생 시 주지사가 주방위군을 즉각 소집하여 재난을 대응 및 복구하거나, 일본의 경우처럼 자위대가 재난발생시 정보수집, 연락관 운용, 위기관리활동 체제의 확립과 병행하여 인명구조, 구급·의료·구조 활동등 응급대책 활동이 가능한 예비군 긴급대응부대 창설 및 운용방안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주요국 군의 재난대응 사례

2.1 미국 주방위군

미국의 주방위군(Ntional Guard)은 전체 31만여 명이 있으며, 평시 자연재해 등 재난발생시 주지사의 명령을 받는다. 즉, 주방위군의 사령관은 주지사로 재난상황 또는 유사시 연방정부에서 할당해준 비행기·차량, 기타 장비와 연료·음식 등 대체가 가능한 장비나 보급품에 대하여 사용한 만큼 보상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주요 재난대응 사례는 미군의 민간지원에 관한 근거는 헌법에 기초하여 지원을 하고 있으며, 군 재난관리체제에서는 민간에 대한 군의 원조(MACA : Military Support to Civil Authorities), 민간소요에 대한 군의 지원(MACDIS : Military Assistance for Civil Disturbance)의 개념을 포함한다.

MACA는 국내의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부의 대책 및 활동을 말하고, MACDIS는 미국의 영토와 재난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 상황에 대한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에 대한 국방부의 지원 및 대책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재난 단계별 재난대응 절차를 살펴보면, 재난단계별 재난대응은 1단계는 시·군이 관할구역에서 재난상황이 발생시 1차적 책임을 가지고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능력을 초과 시에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인접 시·군에 요청을 한다. 재난대응 2단계 해당 주지사 통제 하에 재난대응을 실시하고, 주정부의 지원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주정부에서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인접 주정부에 재난관련 지원을 요청하게 되어 있다. 재난대응 3단계는 주정부 차원에서 재난관련 지원을 한 이후에도 충분한 재난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을 요청하고, 연방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하는 단계를 밟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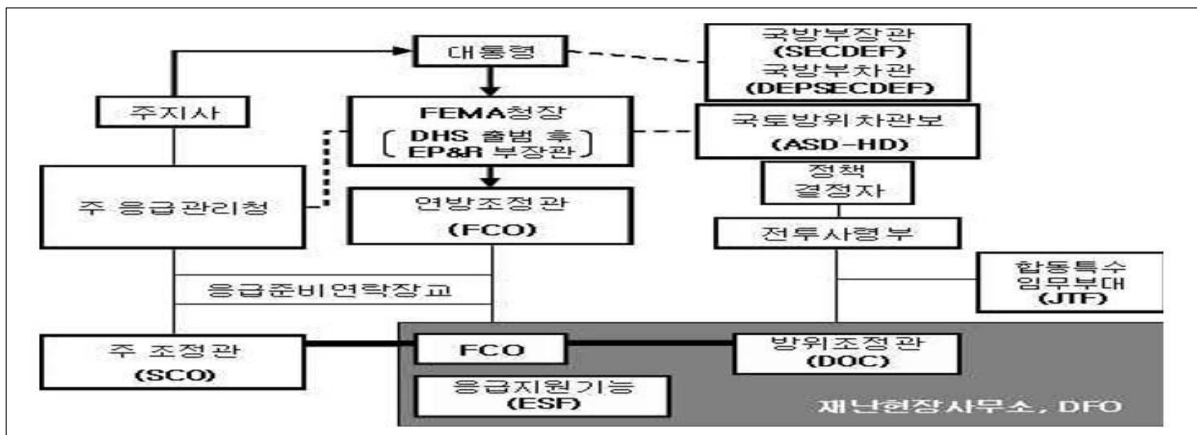


*출처 : 고창석·양기근, 재난관리에 있어 군의 역할과 대비방향(2013, 한국위기관리논집 제8권 제2호)

Fig. 1. US Disaster Stage Disaster Response

2012년 허리케인 샌디의 사례를 살펴보면, 2012년 10월 26일 펜실베이니아(Pennsylvania)의 주지사가 재난을 선포한 이후 펜실베이니아 주방위군(Pennsylvania National Guard)은 재난선포 3일까지 750여명의 주방위군을 소집시켰고, 뉴욕의 경우는 샌디가 상륙하자 1000여명의 주방위군을 소집하였다. 또한, 버지니아(Virginia)의 630여명의 주방위군은 샌디와 관련된 재난복구를 위하여 대기하였고, 샌디가 뉴저지(New Jersey)로 향하고 있을 때 7개주에서는 45,000여명의 주방위군이 허리케인으로 인한 재난을 대비하기 위하여 대기 중에 있던 사례가 있다.

그리고, 허리케인 샌디가 지나간 이후에는 주방위군이 음식과 물, 보급품을 주민에게 지급하였으며, 통신시스템 및 장비, 대규모 공사를 위한 토목공사 장비, 이재민을 위한 침상·담요, 의료지원 등 재난복구 및 구호 활동을 실시하였다. 위와 같이 재난발생시 미국의 군 지원 요청 및 대응절차는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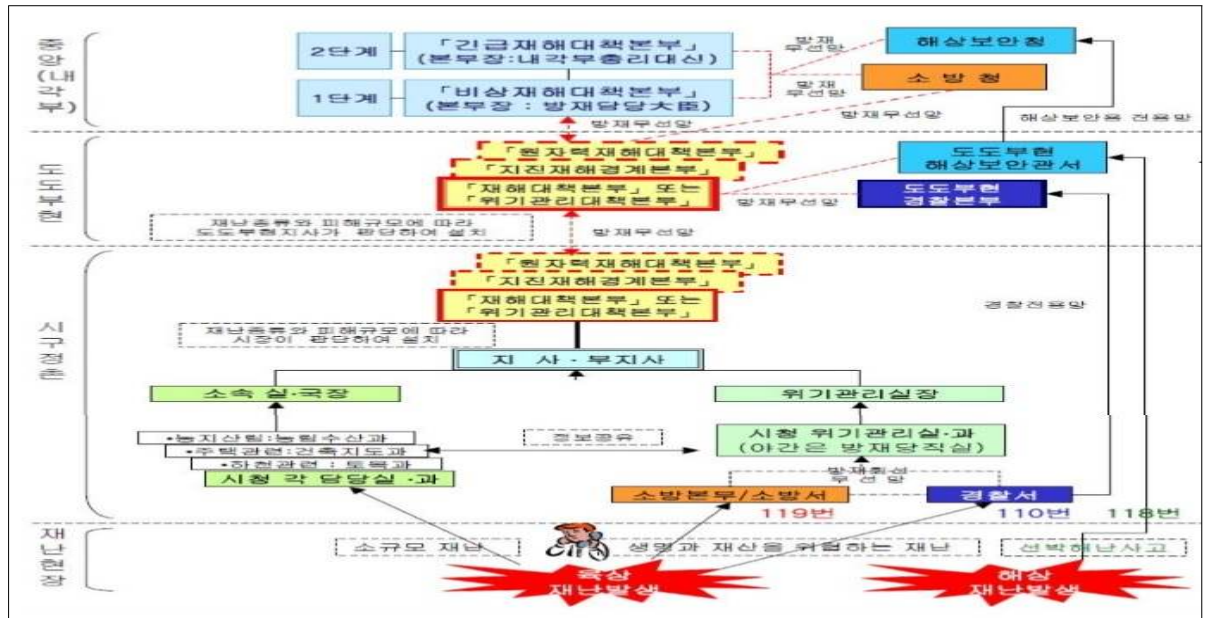
*출처 : 박덕근 외 3명, 재난관리 체계에서의 군의 역할(2006, 한국위기관리논집 제2권 제1호)

Fig. 2. MSCA Flow chart

2.2 일본 자위대

일본은 대규모의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지금의 재난관리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재해대책기본법에 근거하여 방재의 책임, 방재계획, 재난 시 응급대책, 재해복구 등 다양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일본의 위기관련법으로는 「대규모진지대책특별조치법」, 「소방법」, 「수방법」, 「석유화학비상대책특별조치법」, 「대규모진지대책특별조치법」 등이 있다. 실제 재난으로 인하여 일본은 비상재해대책본부를 신속하게 구성하고, 방재계획에 따라 지방방재회의, 지역 소방본부, 소방서가 주축이 되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실제 현장을 통제하여 소방·경찰·자위대를 신속하게 투입하여 실질적인 재난대응활동이 이루어진다. 실제로, 일본의 자위대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기타자와 도시미” 일본 방위상(국방장관)은 효율적인 구조 활동과 재건활동을 위해 일본 자위대 내에 육·해·공군 통합부대를 창설하라고 지시했으며, 실제로 육·해·공군 자위대별로 이뤄지던 구조 및 파견활동이 육상자위대 도호쿠 방면 사령부 산하인 통합부대로 일원화되어 창설되었는데, 이것은 1954년 자위대가 만들어진 이래 일본 내 재난 구조를 위하여 통합임무부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었다. 그래서, 통합부대에는 자위대 전체 병력(24만 명)의 40% 가량인 10만 명이 배속되었고, 중국·러시아·북한 등의 안보위협에 긴급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병력을 제외한 나머지 병력 모두가 구조와 복구 작업에 투입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일본정부는 피해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추가로 예비 자위대 병력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한 사례가 있다. 이렇게 하여, 일본은 재난상황 발생 시 최단 시간내 사상자 구호와 재난지역의 피해복구를 하는 등 재난상황시 육·해·공군의 통합부대는 상당한 대처능력을 보여주었다. 추가적으로, 동일본 대지진을 통하여 재해대책기본법에서 명시된 방재의 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재난발생시 방재체계, 방재계획과 재난예방, 재난시 응급대책, 재해복구 및 지원 등에서 식별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방정부간 상호 유기적 지원을 강조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재난 정보의 적극적 수집·전달·공유체계 강화, 지방자치 단체인 지원업무에 관하여 도도부현(우리나라 특별시 또는 광역시도)과 국가에 의한 조정의 확대와 같은 조항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일본의 재난관리체계도 미국과 유사하게 이루어지는데, 재해대책 기본법에 의거 국가와 도도부현과 시정촌의 업무한계를 명시하고 재난의 1차적 대응을 지방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재난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에서 책임을 지는 상향식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미국과 상당한 유사점이 있음을 아래의 그림을 통하여 알 수가 있겠다.



*출처 : 전미희, 국가 위기관리체계의 비교연구(2013, 박사학위논문)

Fig. 3. Crisis management system of Japan

2.3 외국사례 분석

앞 절에서 고찰한 것과 같이, 미국과 일본은 영토나 국력·환경·문화 등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와 매우 다르지만, 재난상황 발생시 군의 지원기준이나 절차, 지원을 할 상황이 발생 시의 대비태세, 재난발생이후 재난대응 및 복구활동 등에서는 우리 군에 시사한 바는 매우 크다.

첫 번째, 재난 발생시에는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방정부·주정부·지방정부의 주요 임무를 보면, 미국·일본 모두 재난상황 발생시 1차적인 책임은 지방정부가 가지고 재난대응을 실시하고, 자체 능력이 부족하거나 초과할 경우에는 인접 지방정부의 지원을 통해 재난대응 및 복구를 실시하는 것이다.

만약, 지방정부의 통합된 조치에도 능력을 초과하는 재난이 발생할 경우 주정부·도도부현에 지원을 요청한다. 주방위군과 자위대를 포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난극복이 어려울 경우에는 연방정보·중양(내각부)에 지원을 요청하고, 국가대응계획 및 긴급·비상재해대책본부를 통하여 재난을 극복하는데, 미국은 군 부대를 투입하고 일본은 자위대와 예비자위대까지 재난대응 및 복구에 투입한 점에서 큰 교훈을 주고 있다.

두 번째, 군의 재난지원이 합리적으로 결정되면 미국은 단일지휘관 임명을 하고, 합참은 재난부대 지원을 위한 지원전투사령부를 지정하였으며, 일본의 경우는 육·해·공군의 통합부대의 창설을 통하여 재난극복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추어 일상불란하게 지원을 했다. 세 번째,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민간 정부기관의 능력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Bottom-Up방식의 요청시 지원을 하되, 지원원칙에 입각하여 안전이 확보할 때까지 지원을 제공한다.

따라서,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재난대응 및 복구, 민간인 지원을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의 경우를 거울삼아 조심스럽게 재난상황시 예비군 긴급대응부대 창설 및 운용에 대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재난상황시 예비군 긴급대응부대 창설 및 운용

3.1 예비군 긴급대응부대 창설 필요성 및 임무

재난상황시 우리 군부대의 신속하고, 적시적인 대량지원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방안과 대책을 고려한다고하더라도 미국과 같은 주방위군을 주지사(우리나라 시·도지사)의 관할로 상시 두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특정부대 또는 일부를 긴급부대의 개념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본다. 바로, 이러한 부대를 예비군 긴급대응부대라고 본 논문에서 제안하였다. 예비군 긴급대응부대 창설에 대한 네티즌의 반응을 확인한 결과 대다수의 네티즌은 아래의 표와 같이 찬성하는 입장을 지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1. Reserve established emergency response units netizen reactions

division	total	agree	Opposition	do not know
Person	998	904	90	4
%	100	90.6	9	0.6

*출처 : 안보경연연구원, 예비역 복무제도 연구(2011)

앞의 표에서 보았듯이, 재난상황 등 비군사적 포괄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예비군 긴급대응부대창설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위주 보도를 하였고, 네티즌들의 반응도 비교적 우호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국의 주방위군과 유사하게 해당 州 재난 및 위기상황 대처의 기본조직으로서 예비군 긴급대응부대를 창설하여 평시에는 해당 광역시·도의 재해·재난복구, 국지도발 대비작전, 대테러작전 등에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거나, 전시에는 후방지역작전 또는 기동타격임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으나, 본고에서는 재난복구에 주요 중점을 두고 기술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재난상황하 재난지역의 신속한 대응 및 복구, 재난이전으로의 안정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광역시·도 단위의예비군 긴급대응부대 창설은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3.2 예비군 긴급대응부대 창설 법적 검토

예비군 긴급대응부대 창설은 「예비군법」 등에 의거 창설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Table 2. Legal Review of Reserve forces Emergency Response Unit

division	Law	Examination result
Form	Reserve forces act article 3	Support for reserve forces by support
Mission	Reserve forces act article 2	Restoration of disaster, Disease cut off Emergency relief, Patient emergency treat
Budget basis	Reserve forces act article 11	Available within budget range
Training	Reserve forces act article 6	Within twenty days of the year
Mobilization & Convene	Reserve forces act article 6	Available

*출처 : 안보경연연구원, 예비역 복무제도 연구(2011)

3.3 예비군 긴급대응부대 인원 선발과 장비·물자 운용

예비군 긴급대응부대 인원은 상근 복무와 비상근 복무를 고려할 수가 있겠으며, 선발은 부대를 운용하고자 하는 지자체별로 판단하여 선발하여 운용하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상근 복무인원의 선발은 선발 공고를 통하여 공무원에 준한 보수와 직책을 부여하고 선발하여, 상설로 운용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상근 복무로 운용할 경우는 부대운영비, 장비·물

자관리비, 급여 등 각종 예산의 소요가 상당한 수준일 것으로 판단된다. 실 연구 자료에 따르면, 예비군 긴급대응부대 상근 복무인원 50명을 운영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14.2억 원이라는 결과가 나왔다.(안보경영연구원, 2011) 이러한 경우에는 급여는 국가에서 지급하고, 장비·물자를 운영·유지·보수하는 비용은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방안을 적용해야 타당하다고 본다. 만약, 상근 복무요원으로 선발을 하면 급여, 장비·물자의 운영유지비는 소요되더라도 재난상황시에는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가 있다. 하지만, 부대를 상주하고 유지할 수 있는 주둔지와 건물이 필요하여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단점과 지자체의 재무에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점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재난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투입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체계가 필요하고, 재난관리자원의 유형과 해당 필요량에 대하여 객관적 정보가 해당 자원에 대한 보유기관과 해당 기관과의 응원 요청, 동원과 보상에 대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제기되어 왔었다.(한국재난정보학회지, 제 11권 3호 2015)

둘째, 비상근 복무인원의 선발은 현재의 예비군처럼 지원예비군으로 선발하면 될 것이다. 그렇게 선발할 경우에는 이의 제한을 극복가능하고, 재난상황시 현장에 투입할 경우의 급여는 비상근 복무 인원(1일 15만원)에 준하여 지급하면 예산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장비·물자는 사용동원의 절차를 거쳐서 해당 예비군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비·물자를 그대로 가지고 소집하여 운용하는 방법과 지자체에서 장비·물자를 대여하여 소집된 예비군이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예비군이 현업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전시에 적용하는 사용동원의 방법은 법적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소집율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고, 즉각 소집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별로 예산의 규모, 재난발생 상습지역인지, 아니면 재난발생이 거의 없는 지역인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인원 선발 및 창설 규모, 장비·물자 운용을 실시하면 될 것이다.

3.4 예비군 긴급대응부대 창설 규모(안)

먼저, 예비군 긴급대응부대의 편성 기준은 광역시·도 단위 예비군 1개 대대의 규모로 편성하되, 인원의 선발은 전원 지원자 중에서 선발하여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며 세부 조직 및 편성은 아래와 같다.

Table 3. Organization and composition of reserve forces emergency response forces

division	Emergency recovery company(scale : 2)	Multi-purpose company(scale : 1)
Form	Metropolitan city · Provincial unit	
Scale	One company(3platoon)	One company(3platoon)
Person	Reserve force 120(officer : 4, Noncommissioned officer : 3, soldier : 113)	
Mission	Restoration of disaster, Disease cut off	Emergency relief, Patient emergency treat
Equipment & Goods	Vehicle : 1/4t vehicle(1), 5/4t Trailer(2) 2t vehicle(1), 5t vehicle(1), Dump Truck(3) The others : Crane(2), Generator(2) Water purification truck(1)	Vehicle : Ambulance(1), 1/4t vehicle(1), 2t vehicle(1), 5t vehicle(1), NBC reconnaissance vehicle(1) The others : Decontamination Truck(4), Radiation detector(1), Detection equipment(2), Oxygen saturation meter(1)

* Headquarter : Person(20), 1/4t vehicle(1), 5/4t vehicle(2), 2t vehicle(5),

*출처 : 안보경영연구원, 예비역 복무제도 연구(2011)

3.5 예비군 긴급대응부대 훈련

예비군 긴급대응부대 창설시 훈련 체계는 재난상황을 가정하여 실전적인 훈련이 필요로 할 것이다. 따라서, 훈련의 유형은 기본·전문교육, 정기교육, 기회교육으로 나누어 시행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정기교육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

원에 위탁하여 재난안전관리자과정 등 신분·직책·종사하고 있는 업무에 따라서 많은 정규 교육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운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교육을 이수하여 직무능력을 배양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둘째, 정기교육은 예비군 긴급대응 부대를 예비군 소집절차에 의거 소집하여 동원절차를 숙달하고, 월 1회 주말 소집훈련을 1박 2일(연 24일)을 나누어서 재난 복구, 응급구조, 장비·물자상태 점검 요령 등을 교육하는 방법을 적용하거나, 연 1회(20일) 소집교육을 실시하되 아래와 같은 훈련 모델을 적용하면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Table 4. Regular education(Emergency recovery company)

Week	1Week	2Week	3Week	4Week
education program	Restoration Recovery Technology	Special Qualification Training	Prevention of Disease	General Training Exercise

Table 5. Regular education(Multi-purpose company)

Week	1Week	2Week	3Week	4Week
education program	Emergency relief	Patient emergency treat	NBC Training	General Training Exercise

3.5 예비군 긴급대응부대 운용 방안

예비군 긴급대응부대 운용 방안은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상황을 가정하여 생각해 보면 되는데, A라는 지자체에서 폭설·폭우 등으로 재난이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신속하게 A지자체의 긴급대응부대가 투입되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재난의 규모가 A지자체의 예비군 긴급대응부대의 능력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상황이 달라진다.

그러므로, 예비군 긴급대응부대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재난상황시에는 「지자체별 상호운용·지원」이라는 대원칙이 필요하겠다. 다시 설명하면, A지자체 예비군 긴급대응부대가 투입하여 조기에 재난을 복구 또는 극복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신속한 재난복구를 통한 지역주민안정과 재난이전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B·C지자체의 예비군 긴급대응부대가 재난이 발생한 지자체로 전환되어 운용될 수 있다면 효과는 상당히 배가될 것이다.



Fig. 4. Crisis management system of Japan

4. 결론

재난상황시 예비군 긴급대응부대 창설 및 운용은 창설 규모, 예산, 부대운영, 법적 검토, 훈련 방법 등 다양한 방면에서 분석해 볼 때 상당히 의미있고 건설적인 방안으로 판단된다. 또 한가지는 한반도의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의 발생빈도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재난관리 업무의 「군 기본 임무화」를 위한 초석이 되고 있다. 실례로, 지금까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현역위주의 대민지원 개념으로 지원되었으며, 이것은 지원에 대한 결심권자의 판단과 시간이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어서 초동조치가 지연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초래하였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자체 지역에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즉각 운용할 수 있는 가용부대가 상설 또는 비상설로 편성되어 있다면 초기 재난시 대응체계는 상당히 의미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광역시·도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예비군 긴급대응부대를 창설하여 적시적으로 운용한다면, 재난상황시 신속한투입으로 재난복구 및 재난이전으로의 전환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특정지역에서만 운용되는 부대가 아닌, 상황을 고려하여 인접 광역시·도로 전환하여 운용한다면 재난상황을 극복하는데 상당한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임에 분명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재난을 신속하게 극복하고, 성공적인 초기 재난대응을 통한 재난복구 및 지역안정을 상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예비군 긴급대응부대 창설 및 운용방안에 대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References

- [1] National Civil Defense Disaster Safety Education Center(2017), 2017 Education and Training Plan
Institute of Security Management(2011. 3.) Reservist service study
- [2] Tae-Woong, Kim(2017), A Case Study on Disaster Management and Response
- [3] Tae-Woong, Kim(2016), Disaster management theory
- [4] Deok-Keun, Park(2006), "The Role of the Army in Disaster Management System", Korean House for the Management of Crisis Vol.2, No.1, pp.1-13
- [5] Chang Suk, Ko(2012), "The Role of the Army in Disaster Management and Direction of Preparation", Korean House for the Management of Crisis Vol.8, No.2, pp.162-179
- [6] Dolche, S. (2001). Nondestructive damage detection in civil engineering structures, U.S. Patent No. 1,454,210.
- [7] Dong Gyun, Park (2013), "The Role of the U.S. Army in Disaster Management and the Korean Implication", The Theory and Practice of Risk Management Vol.9, pp.35-36
- [8] Mi Hee, Jeon(2013), A Comparative Study on the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A doctoral dissertation at Jeonbuk University's Graduate School
- [9] Yong Jin, Yoo(2017), A Study on the Army's Role Expansion in the event of a disaster from a Comprehensive Security Perspective, A master's degree from Kyonggi University graduate school.
- [10] Chul Hun, Kwon(2008), Determining the Proper Needs of Support Equipments and Materials by Disaster Type, Defense University
- [11] Joon-young, Huh(2014),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Disaster Management System for the Response to Future Disaster, Korean House for the Management of Crisis Vol.10, No.10, pp.173-195
- [12] Kyung Hee, Cho(2015), Japan's law on safety protection and the enhancement of the role of the SDF, Parliamentary discussion Vol.10, No.2, pp.291-314
- [13] Framework Act 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2017), Ministry of Justice National Legal Information Center
Disaster Relief Act(2016), Ministry of Justice National Legal Information Center
- [14] Changyeal Lee(2015), A Study of the stockpile and mobilization framework for the disaster management resources, Journal of Korea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Vol.11, No.3, pp.376